

No. 61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중범죄 소장의 결정이 임박한 피의자의 교도소 수감 시간 제한을 규정하는 법 규정의 일시 유예 및 수정

본인은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2012년 10월 26일에 발령하였습니다.

이에, 나,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동안 어느 기관의 법규, 지방법, 조례, 명령, 규칙 또는 규정의 특정 조항,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재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법 2-B조의 29-a항에 의해 그 조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, 본 행정 명령이 발행된 날짜로부터의 기간 동안 다음의 법률들을 일시 정지합니다:

형사소송법 제180.80조, 2012년 10월 26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제47호에 따라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된 날로부터 2012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러한 시간 제한 기간이 끝날 때 Nassau 카운티의 지방 형사 법원에 중범죄 소장이 제출된 피의자를 해당 중범죄 소장의 결정을 앞두고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로 한다.

2012년 11월 4일 Albany

시에서 주 옥새 및 자필로

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